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5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7호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4호, 제68호 및 제8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95호 및 제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및 제118호를 각각 삭제한다.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도서지역식수원개발만 해당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수목원 코디네이터만 해당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장비지원은 제외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만 해당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제외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은 제외
---------------------	--------------------------------	-----------------------

별표 2에 제90호 및 제10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0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62호부터 제295호를 각각 신설한다.

90. 노인시설 운영
10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지자체에 한정한다.)
111. 노숙인 시설운영 등 노숙인 보호
262.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에 한정한다.)
26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64. 노인보호구역개선
265. 교통사고찾은곳개선
266.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67. 지방이양사무 지원
268. 위험도로 구조개선
269.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원
27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자체 보조,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에 한정한다.)

- 271.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 272.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 273. 체육진흥시설 지원
- 274. 유기질비료 지원
- 275. 푸드플랜 운영 지원(안전품질관리에 한정한다.)
- 276.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지자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에 한정한다.)
- 277.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한정한다.)
- 278.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 27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280. 암환자 지원
- 28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82.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는 제외한다.)
- 283. 상수도시설 확충 관리(도서지역식수원 개발은 제외한다.)
- 284.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자치단체 지원 중 기초자치단체 지원에 한정
한다.)
- 285.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 제외한다.)
- 286.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에 한정한다.)
- 287. 주차환경개선 지원
- 288. 지방이양 항만지원
- 289.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290. 여객 터미널 운영(지방관리 터미널에 한정한다.)
- 291. 해양관광육성(해양레포츠활성화 사업내 교육프로그램에 한정한다.)
- 292. 자치경찰사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은 제외한다.)
- 293.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지원에 한정한다.)
- 294.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제외한다.)
- 295.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6호, 제57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6호, 제108호, 제118호 및 별표 2 제90호, 제108호, 제109호, 제111호, 제262호, 제263호, 제264호, 제265호, 제267호, 제269호, 제270호, 제271호, 제274호, 제275호, 제276호, 제277호, 제278호, 제279호, 제280호, 제281호, 제282호, 제284호, 제285호, 제286호,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 제291호, 제294호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제107호 및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 제273호, 제283호, 제287호, 제292호, 제293호, 제295호의 개정규정은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6호, 제28호, 제52호, 제57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 제108호 및 제118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6호, 제28호, 제52호, 제57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및 제1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현행			개정안		
사업	기준 보조율	비고	사업	기준 보조율	비고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삭제)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u>도서지역식수원 개발만 해당</u>
52. 산림휴양·녹색 공간 조성	50		(삭제)		
57. 산림생태증진	50		57. 산림생태증진	50	<u>수목원 코디 네이터만 해당</u>
61. 지역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50		61. 지역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50	<u>장비 지원은 제외</u>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용지매입비 제외	(삭제)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 사업은 보조율 80%	(삭제)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 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용지매입비 제외	(삭제)		
95. 보육 돌봄서 비스, 육아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어 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 린이집 지원 및 공공 형 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 도의 전전년 도 최종예산 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 상인면서 재 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 초자치단체 는 10%p 인 상 나 사회복지비	95. 보육 돌봄 서비스, 육 아종합지 원서비스 제공, 어 린이집 교 원양성 지 원, 어린이 집지원 및 공공형 어 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u>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은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만 해당</u> <u>공공형어린이 집 운영비 제 외</u> 해당 회계연 도의 전전년 도 최종예산

		지수가 20 미 만인면서 재 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 초자치단체 는 10%p 인 하			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 상인면서 재 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인면서 재정자 주도가 85 이 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99.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u>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은 제외</u>
	성장추 진지역 : 80			성장추 진지역 : 80	
105. 위험도로 구조 개선	50		(삭제)		
106. 교통사고 찾은 곳 개선	50		(삭제)		
107.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50		(삭제)		
108.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50		(삭제)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삭제)		

□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현행	개정안
사업	사업
90. 노인시설(양로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10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0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지자체에 한정한다)
109. 업무보조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삭제)
111.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111. 노숙인 시설운영 등 노숙인 보호
(신설)	262.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마을기업중간 지원기관운영에 한정한다)
(신설)	263.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신설)	264. 노인보호구역개선
(신설)	265. 교통사고찾은곳개선
(신설)	266.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신설)	267. 지방이양사무지원
(신설)	268. 위험도로구조개선
(신설)	269.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원
(신설)	270. 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구축 지자체보조,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에 한정한다)
(신설)	27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신설)	27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신설)	273. 체육진흥시설지원
(신설)	274. 유기질비료지원
(신설)	275. 푸드플랜운영지원(안전품질관리에 한정한다)
(신설)	276. 농식품소비정책강화(지자체별소비 정책강화사업에 한정한다)
(신설)	277.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한정한다)

(신설)	278.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신설)	279.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설)	280. 암환자지원
(신설)	281.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설)	282.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제외한다)
(신설)	283. 상수도시설확충관리(도시지역 식수원개발은 제외한다)
(신설)	284.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자치단체지원 중 기초자치단체 지원에 한정한다)
(신설)	285.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86.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에 한정한다)
(신설)	287. 주차환경개선지원
(신설)	288. 지방이양항만지원
(신설)	289. 특행기관지방이전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신설)	290. 여객터미널운영(지방관리터미널에 한정한다)
(신설)	291. 해양관광육성(해양레포츠활성화사업 내 교육프로그램에 한정한다)
(신설)	292. 자치경찰사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93.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장비지원에 한정한다)
(신설)	294.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코디네이터는 제외한다)
(신설)	295.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연 락 처	(044) 215 - 7158